

## 이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전문위원)

- 이 개정조례안은 1998년 7월 8일 이상복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1998년 7월 14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

### 1. 제안이유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자 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이 기초의회의원 정수를 선거구 별로 인구 2만을 넘는 읍·면·동의 경우에는 매 2만이 넘는 2만까지는 1인을 더하여 선출하던 제도를 폐지하고 읍·면·동마다 1인을 선출하되 인구 5천 미만의 동은 인접하여 위치한 읍·면·동과 선거구를 통합하여 선출하도록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이천시의회 의원 정수가 14인에서 13인으로 경기도 시군 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가 개정, 축소되어 현재의 상임위원회 위원회별 위원 정수를 이천시의회 의원 정수에 부합하도록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 2. 주요골자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산업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7”인에서 “6”인으로 조정함

### 3.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 및 경기도 조례의 개정에 따라 이천시의회 의원의 정수가 축소되어 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이천시의회 의원 정수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의 취지에 따른 내용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